



제420회국회(임시회)
제1차보건복지위원회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의료기기에 대한 급여 근거 마련〉

■ 김남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05223호)

2025. 1.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오세일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2
1. 의료기기에 대한 급여 근거 마련	2

I. 개요

1. 김남희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5223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김남희의원 등 17인
- (2) 제 안 일 : 2024. 11. 4.
- (3) 회 부 일 : 2024. 11. 5.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은 연속혈당측정기 등과 같이 환자에게 필요한 의료기기 사용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면서 급여가 아닌 ‘요양비’로 지급하여 환자에게 증빙 부담을 주고 절차가 번거로움

이에 요양비 방식으로 비용의 일부만 지원하는 연속혈당측정기 등 만성질환 관리에 필요한 의료기기와 그 소모품 등에 대하여도 약제와 마찬가지로 급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의료급여 수급자의 권리를 확대하고 수급자의 질병관리에 꼭 필요한 의료기기 사용으로 인한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자 함(안 제7조제1항, 제9조 및 제29조의2).

Ⅱ. 주요 내용별 검토

1. 의료기기에 대한 급여 근거 마련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의료기기의 지급 또는 대여에 대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기기 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의 영업소를 의료급여기관으로 규정하며, 제조업자 등의 금지행위 중 의료급여의 범위 및 의료수가 계산에 있어 의료급여기금에 손실을 주는 행위에 의료기기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7조 제1항제8호 신설, 제9조제1항제5호 신설, 제29조의2제1항).

현행	개정안
제7조(의료급여의 내용 등) ① 이 법에 따른 수급권자의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한 의료급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7. (생략) <u><신설></u> ②·③ (생략)	제7조(의료급여의 내용 등) ① - ----- ----- ----- --. 1. ~ 7. (현행과 같음) 8. <u>의료기기(「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를 말한다)의 지급 또는 대여</u> ②·③ (현행과 같음)
제9조(의료급여기관) ① 의료급여는 다음 각 호의 의료급여기관	제9조(의료급여기관) ① ----- -----

에서 실시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익상 또는 국가정책상 의료급여기관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급여기관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 4. (생략)

<신설>

② ~ ⑤ (생략)

제29조의2(제조업자등의 금지행위 등) ①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의 제조업자·위탁제조판매업자·수입자·판매업자 및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제조업자·수입업자·수리업자·판매업자·임대업자(이하 이 조에서 “제조업자등”이라 한다)는 약제·치료재료와 관련하여 제7조제2항에 따른 의료급여의 범위 및 의료수가를 계산할 때에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료급여기관의 위반행위에 개입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여 약제·치료재

-----.

-----.

1. ~ 4. (현행과 같음)

5.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판매업자 또는 의료기기 임대업자의 영업소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29조의2(제조업자등의 금지행위 등) ① -----

-----약제·치료재료

·의료기기-----

-----약제·치료재

료의 가격 한도나 판매가격을 높이는 등 속임수나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당 한 방법으로 기금에 손실을 주 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생 략)	료·의료기기----- ----- ----- ----- -----. ② (현행과 같음)
--	---

나. 검토의견

□ 의료급여는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로서 건강 보험과 함께 국민 의료를 보장하는 제도임.

-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인 자)와 다른 법률에 따라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로 구분되며,
- 지원내용은 「의료급여법」 제3조제3항¹⁾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1종 수급권자와 2종 수급권자로 구분하여 수급권자가 의료 기관 등을 이용하는 경우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하고 있음.

< 최근 5개년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예산 현황 >

(단위: 명, 백만원)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수급권자	1,487,557	1,507,981	1,526,632	1,516,507	1,524,098
예산액	6,391,530	7,003,762	7,680,461	8,123,234	9,098,368

* '23년부터 신규 타법 수급권자는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1종과 2종으로 구분

** 자료: 보건복지부

1) 「의료급여법」 제3조(수급권자) ③ 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의 내용과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 현재 의료기기에 대한 의료급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인 수급권자에게 일정한 보조기기에 대하여 급여를 실시하고 있고²⁾, 일부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의료급여법」 제12조³⁾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⁴⁾에 따라 ‘요양비’로서 지원하고 있는데,

요양비 지원 방식은 환자에게 별도의 서류 제출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증빙 부담을 주고 절차가 번거롭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⁵⁾

- 요양비를 지급 받으려면 요양비 지급청구서와 요양비처방전, 세금계산서, 의료기기를 대여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하고(「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4조제3항), 환자가 먼저 비용을 지급하고 지급청구를 하여야 함(제24조제5항).

□ 이에 개정안은 모든 수급권자에게 의료기기의 지급 또는 대여에

2) 「의료급여법」

제13조(장애인 및 임산부에 대한 특례)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인 수급권자에게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보조기기(이하 이 조에서 “보조기기”라 한다)에 대하여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3) 「의료급여법」

제12조(요양비)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권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의료급여기관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제28조제1항에 따라 업무정지기간 중인 의료급여기관을 포함한다)에서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받거나 의료급여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출산을 하였을 때에는 그 의료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급권자에게 요양비로 지급한다.

4)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4조(요양비) ①법 제12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할 수 없거나 의료급여기관이 없는 경우
2. 만성신부전증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복막관류액 또는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의료급여기관 외의 의약품판매업소에서 구입·사용한 경우
3. 산소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의사의 산소치료처방전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산소치료를 받은 경우
4. 당뇨병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혈당검사 또는 인슐린주사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나 당뇨병 관리기기를 의료급여기관 외의 의료기기판매업소에서 구입·사용한 경우
5. 신경인성 방광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자가도뇨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의료급여기관 외의 의료기기판매업소에서 구입·사용한 경우
6.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환이 있는 사람으로서 인공호흡기·기침유발기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인공호흡기·기침유발기를 대여받아 사용하는 경우
7. 수면무호흡증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양압기(수면 중 좁아진 기도에 지속적으로 공기를 불어 넣어 기도를 확보해 주는 기구를 말한다)를 대여 받아 사용하는 경우

5) p.13 참고2 참조.

대한 비용을 의료급여로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의료기기를 필수적으로 이용하여야 하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취지로 보이는바,

1형당뇨병과 같은 중증난치질환 치료에 필수적인 연속혈당측정기 등 일부 의료기기는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큰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빈번하게 이용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관련 비용 부담의 경감 및 절차 간소화를 위한 의료급여 지원 필요성은 있다고 보임.

□ 다만,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첫째, 현행법에서 의료급여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는 기관들의 성격을 고려하여, 의료기기 판매업자 및 임대업자의 영업소를 의료급여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현행법 제2조제2호6)에서는 ‘의료급여기관’을 수급권자에 대한 진료·조제 또는 투약 등을 담당하는 의료기관 및 약국 등으로 정의하고 있고,

제9조제1항에서는 의료급여기관으로 ①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② 「지역보건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소·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③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 ④ 「약사법」에 따라 개설등록된 약국 및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이를 1차·2차·3차로 구분하여, 그 진료범위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⁷⁾

6) 「의료급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의료급여기관”이란 수급권자에 대한 진료·조제 또는 투약 등을 담당하는 의료기관 및 약국 등을 말한다.

7) 「의료급여법」

제9조(의료급여기관) ② 의료급여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되, 의료급여기관별 진료범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 제1차 의료급여기관

가. 「의료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개설신고한 의료기관

이는 의료급여가 기본적으로 수급권자에게 각종 검사 및 치료 등 서비스를 지급하는 것⁸⁾이라는 점에서, 의료급여가 지급될 수 있는 진료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으로 보임.

그런데 의료기기 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의 경우, 진료·조제 또는 투약 등의 의료서비스를 지급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의료적 효과를 가진 일정한 제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현행법에 따른 의료급여기관으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측면이 있음.

□ 둘째, 의료급여 대상이 되는 의료기기의 종류 및 등급에 대하여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한 측면이 있음.

개정안에서는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전부에 대한 의료급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의료기기는 사람이나 동물에게 단독 또는 조합하여 사용되는 기구·기계·장치·재료·소프트웨어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을 말하며, 「의료기기법」 제2조 제1항⁹⁾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나.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료급여기관

2. 제2차 의료급여기관: 「의료법」 제33조제4항 전단에 따라 개설허가를 받은 의료기관

3. 제3차 의료급여기관: 제2차 의료급여기관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

* 의료급여기관별 진료범위는 p.12 참고1 참조.

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의3(의료급여) ① 의료급여는 수급자에게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각종 검사 및 치료 등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9) 「의료기기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의료기기”란 사람이나 동물에게 단독 또는 조합하여 사용되는 기구·기계·장치·재료·소프트웨어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한다. 다만,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과 의약외품 및 「장애인복지법」 제65조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구 중 의지(義肢)·보조기(補助器)는 제외한다.

1. 질병을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2. 상해(傷害) 또는 장애를 진단·치료·경감 또는 보정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3. 구조 또는 기능을 검사·대체 또는 변형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4. 임신을 조절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비록 현행법 제7조제2항에서 의료급여의 방법·절차·범위·한도 등 의료급여의 기준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법률 개정을 통해 의료급여를 실시하려는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그 범위와 한도 등을 사전에 충분히 논의하여, 하위 법령에서 개정안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추후 법 집행단계에서의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고 의료급여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현재 요양비로 지원되는 의료기기를 우선적으로 규정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임.

□ 셋째, 의료급여화에 따라 환자의 의료기기 선택권이 제한되는 등 개정안에 따른 지원방식의 변화가 환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함.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제1호에서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할 수 없거나 의료급여기관이 없는 경우에 요양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취지는, 요양비 보다 의료급여를 통한 지원을 우선시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바, 의료기기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요양비 지원에 관한 동 시행규칙의 근거 조항¹⁰⁾은 삭제될 가능성이 있음.

10)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4조(요양비) ①법 제12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 3. (생략)

4. 당뇨병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혈당검사 또는 인슐린주사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나 당뇨병 관리기기를 의료급여기관 외의 의료기기판매업소에서 구입·사용한 경우

5. 신경인성 방광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자가도뇨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의료급여기관 외의 의료기기판매업소에서 구입·사용한 경우

6.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환이 있는 사람으로서 인공호흡기·기침유발기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인공호흡기·기침유발기를 대여받아 사용하는 경우

7. 수면무호흡증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양압기(수면 중 좁아진 기도에 지속적으로 공기를 불어 넣어 기도를 확보해 주는 기구를 말한다)를 대여 받아 사용하는 경우

따라서 각각의 지원제도의 장·단점을 살펴, 개정안에 따라 의료급여로 지원하는 경우에도 의료기기에 대한 환자의 정보 접근성 강화 및 의료기기 품질 유지 등에 대해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함.

- 요양비 지원의 경우, 환자가 의료기기 비용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그만큼 본인의 상태와 필요에 맞는 의료기기를 직접 선택¹¹⁾할 수 있고, 공급자 간 경쟁을 통한 품질제고 등의 장점이 있을 것으로 보임.

- 의료급여 지원의 경우, 환자가 의료기기 비용을 선지출하지 않고 직접 청구할 필요도 없다는 점에서, 경제적·행정적 접근성이 높아질 수 있지만, 의료기기 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가 다양한 의료기기에 대한 환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보다는 급여비용 청구에 유리한 의료기기만을 제공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환자의 개별적인 필요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거나 의료기기의 품질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임.

□ 한편, 의료급여 제도는 전 국민 건강보험제도의 급여체계를 준용하고 있으므로 동 개정안은 동일한 내용의 건강보험법 개정안¹²⁾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임.

- 건강보험법 개정안은 의료기기에 대하여 요양급여¹³⁾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임.

11) 보건복지부는 “당뇨측정기나 소모품 재료는 그 종류가 워낙 다양하고 판매처가 다수 존재해 환자의 선택권을 늘리기 위해 요양비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음.
(쿠키뉴스, “1형 당뇨병 환자단체 “약만큼 많이 쓰는 의료기기도 요양급여로”, 2023.4.25.
<https://www.kukinews.com/article/view/kuk202304250078>)

12)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5225호)

13)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요양급여) ①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양급여를 실시한다.
1. 진찰·검사 2. 약제(藥劑)·치료재료의 지급 3. 처치·수술 및 그 밖의 치료 4. 예방·재활 5. 입원 6. 간호 7. 이송(移送)

3. 관계 부처 및 단체 의견

□ (보건복지부: 신중검토) 가정에서 사용하는 의료기기를 ①판매·임대업자에게 ②판매·임대업체에서 ③구입·대여하는 것을 의료급여(요양급여)에 포함하는 것은, 의료인에 의한 의료서비스 중심의 현행 급여체계 근간을 변경하는 것으로 신중한 검토 필요.

- 의료급여기관(요양기관)은 진찰·수술·처치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단순히 의료기기 유통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기기 판매·임대업소를 의료급여기관에 포함하는 것은 현행 제도 운영과 부합하지 않음.

□ (대한의사협회) 만성질환 관리에 사용하는 의료기기 등을 의료급여화할 경우 의료급여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킬 소지가 있어 이를 고려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대부분의 의료기기가 고가인 만큼 의료기관의 의도와 상관없이 잘못 급여 청구할 경우, 이에 대한 심사 조정 및 환수에 따른 의료기관의 피해가 우려되는바 반대함.

의료급여 제도의 틀 안에서 예산확보 등 별도의 재정확보 수단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며, 재원마련 방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대한약사회) 현행 요양비 형태로 지원하는 의료기기 및 소모품 관련하여 환자의 청구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동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의료기기 등을 약제와 같은 급여적용을 위해 ‘의료기기 판매업자’ 또는 ‘의료기기임대업자의 영업소’을 의료급여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보여짐.

- ‘의료기기 판매업자’ 또는 ‘의료기기임대업자의 영업소’을 의료급여기관으로 지정하기에 앞서, 현행 환자의 요양비 청구에 대한 행정적 부담을 줄이고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청구절차 및 서류간소화를 추진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문 의 처
02)6788-5497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16조(의료급여기관별 진료범위)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의료급여기관별 진료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차의료급여기관(약국을 제외한다)에서 행할 수 있는 진료의 범위
 - 가. 간단한 외과적 처치 그 밖의 통원치료가 가능한 질병의 진료
 - 나. 장기치료가 필요한 만성질환으로서 입원할 필요가 없는 질병의 진료
 - 다. 질병상태·이송거리 및 이송시간을 고려할 때 환자를 다른 의료급여기관으로 이송을 하여서는 환자의 생명에 위험이 초래되는 경우의 입원진료
 - 라. 제1차의료급여기관에서 입원진료를 받는 것이 수급권자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입원진료
 - 마. 「지역보건법」에 의한 보건의료원에서의 입원진료
 - 바.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노숙인 등인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신청한 경우의 진료(노숙인진료시설인 제1차의료급여기관만 해당한다)
 - 사. 제3조제5항에 따라 제2차의료급여기관 또는 제3차의료급여기관으로부터 회송받은 환자의 진료
2. 약국에서 행할 수 있는 조제의 범위
 - 가. 처방전에 의한 조제
 - 나. 「약사법」 제23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처방전에 의하지 아니한 직접 조제
3. 제2차의료급여기관에서 행할 수 있는 진료의 범위
 - 가.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진료
 - 나.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노숙인 등인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신청한 경우의 진료(노숙인진료시설인 제2차의료급여기관만 해당한다)
 - 다. 제3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제1차의료급여기관 또는 다른 제2차의료급여기관으로부터 의뢰받은 환자의 진료
 - 라. 당해 의료급여기관에 입원하였던 환자로서 퇴원후 경과의 관찰이 필요한 환자의 진료
 - 마. 제3조제5항에 따라 제3차의료급여기관으로부터 회송받은 환자의 진료
4. 제3차의료급여기관에서 행할 수 있는 진료의 범위
 - 가.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의 진료
 - 나. 제3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제2차의료급여기관 또는 다른 제3차의료급여기관으로부터 의뢰받은 환자의 진료
 - 다. 당해 의료급여기관에 입원하였던 환자로서 퇴원후 경과의 관찰이 필요한 환자의 진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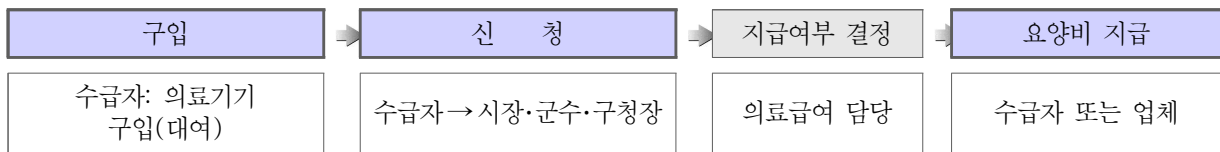
참고2	의료기기에 대한 의료급여 요양비 지원 내용 (자료: 보건복지부)
-----	-------------------------------------

□ 주요 내용

- 의료급여 수급자가 긴급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의료급여기관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받은 경우 해당 금액 지원

□ 지급 절차

【요양비 지급 절차】



- ① 수급자는 의사 처방전을 발급받아 직접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구입 또는 대여
- ② 구입(대여) 후 수급자는 요양비지급청구서와 증빙서류를 시장·군수·구청장에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복지로 www.bokjiro.go.kr)으로 제출
- ③ 수급자로부터 요양비 지급청구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지급여부를 결정한 후 수급자 또는 해당기관*에 요양비 지급

* 수급자가 구입(대여) 업체로 대금지급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업체 계좌에 입금 가능

□ '24년 요양비 지원기준

연번	구분 (지원형태)	급여대상	급여내용
1	자동복막 투석 복막관류액 또는 소모성 재료비 (구입비 지원)	만성신부전증 환자	■ 만성신부전증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자동 복막 투석 시 사용되는 복막관류액 또는 소모성 재료를 의료급여기관 외 의약품 판매업소에서 구입·사용한 경우 ■ 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카세트, 배액백 및 카테터 말단 폐색기) : 1일 10,420원
2	당뇨병 소모성 재료비 (구입비 지원)	당뇨병환자로 인슐린이 필요한 자 등	■ 당뇨병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혈당 검사 또는 인슐린 주사에 사용되는 당뇨 소모성 재료*를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구입·사용한 경우 * 혈당측정검사지, 채혈침, 인슐린주사기, 인슐린주사바늘, 인슐린 펌프용 주사기, 인슐린 펌프용 주사바늘,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 (제1형 당뇨) - 전체: 1일 2,500원

연번	구분 (지원형태)	급여대상	급여내용
			- 만 19세 미만: 1일 4,500원 * 만 19세 미만은 인슐린자동주입기(복합폐쇄회로형 기기를 구입한 대상자에 한함, 나이는 처방일 기준으로 계산) ▪ (제2형 당뇨) 1일 900원~2,500원 ▪ (연속 혈당 측정용 전극) - 전체: 1일 10,000원 - 만 19세 미만: 1일 11,000원 * 만 19세 미만은 인슐린자동주입기(센서연동형, 복합 폐쇄회로형) 기기를 구입한 대상자에 한함(나이는 처방일 기준으로 계산) - 기준금액: 제품별 사용 가능 일수 × 일당 기준 금액
3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비 지원)	제1형 당뇨병 환자	▪ 제1형 당뇨병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당뇨관리 기기를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구입·사용한 경우 ▪ 연속혈당측정기 : 210,000원/3개월 ▪ 인슐린자동주입기_ - 기본형: 1,700,000원/개 - 센서 연동형: 2,500,000원/개 - 복합폐쇄회로형: 4,500,000원/개
4	자가 도뇨 소모성 재료비 (구입비 지원)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 환자 등	▪ 신경인성 방광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자가도뇨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간헐적 도뇨 카테터)를 의료급여 기관 외의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구입·사용한 경우 ▪ 간헐적 도뇨 카테터 지원 : 9,000원/일 (최대 6개/일)
5	산소치료 (산소발생기) (대여비 지원)	호흡기 장애인 1급·2급, 중증의 만성심폐질환자 등 산소치료가 필요한 경우	▪ 산소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산소치료를 대여받는 경우 ▪ 가정용 : 120,000원/월, 휴대용 : 200,000원/월 ※ 가정용은 하루를 사용한 경우에도 월 지급 금액 전액 지급, 휴대용은 15일 이내 임대 시 50%, 16일 이상 100% 지원
6	인공호흡기 (대여비 지원)	회귀난치질환, 중추신 경계 질환·폐질환·심장 질환과 만성호흡부전이 동반되는 경우	▪ 인공호흡기가 필요한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건보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인공호흡기 치료 서비스를 제공받은 경우 ▪ 인공호흡기대여료 : 356,000~535,000원/월
7	기침유발기 (대여비 지원)	인공호흡기 사용자 중 기침유발기 필요한자	▪ 인공호흡기를 사용하는 사람 중 기침유발기가 필요한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건보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기침유발기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 ▪ 기침유발기 대여료 : 160,000원/월
8	양압기 (대여비 지원)	수면무호흡증 관련 상병 및 진단기준에 해당되어 양압기가 필요한 자	▪ 양압기가 필요한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건보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양압기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 ▪ 양압기 대여료 76,000~126,000원/월 ▪ 소모품(마스크) 구입비(95,000원/1개(연))

□ 요양비 지급 현황

(단위 : 건, 백만 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복막관류액	1,008	787	1,161	853	1,168	822	1,169	875	1,123	859
소모성 재료 (자동복막투석 등)	2,166	721	2,310	804	2,143	763	1,923	712	1,771	700
당뇨 소모성 재료	68,328	7,988	77,282	9,571	82,430	10,805	87,598	12,181	87,575	12,822
당뇨병관리기기 (인슐린주입기, 연속혈당측정기)	118	48	188	65	432	114	409	126	확안중	확안중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4,156	3,178	4,509	3,454	4,976	3,854	5,153	4,012	5,412	4,222
산소치료	57,940	8,665	65,340	9,872	76,669	11,662	92,054	14,113	102,747	15,886
인공호흡기	11,345	6,576	12,491	7,185	13,297	7,482	14,406	8,000	14,741	8,320
기침유발기	2,975	469	3,028	476	3,149	493	3,058	477	3,149	491
양압기	14,063	1,234	17,532	1,533	21,700	1,899	27,834	2,445	26,156	2,337

주) '24년도 자료: '24.11.30. 행복e음 발체 기준